

제재내용 공시

1. 조합명 : 전남동부수협
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4. 3. 7.
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임 · 직원	감봉 및 변상(3명)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제재대상 사실

○ 선박담보대출 사후관리 부적정

- 1급 이☆☆ 외 2명은 차주 김♣♣에게 농신보(해제조건부) 담보 기업시설자금대출 360,000천원을 약정하고 선박 건조자금 최종지급 후 어선보험을 가입하고 질권설정하였으나 차주가 분납보험료 중 1회분만 납부하고 차후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채권보전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해당대출에 대한 기한이익상실 조치나 조합이 공제계약 계속의 절차를 밟지 않아 해당 어선보험은 해지 처리되었음.
- 이후 대출연체로 조합은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, 법원의 선박인도 명령에 차주가 응하지 않자 차주 김♣♣를 경찰서에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으며, 경찰서의 수사결과 통지(불송치, 혐의없음)를 통해 담보선박을 보관중인 조선소의 화재로 해당 선박이 소실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어선보험 기 해지로 담보선박의 재해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해 153,747천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.

< 관련법규 >

1. 「수협 여신거래기본약관」 제7조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)
2.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 제1편 제155조(공제(보험)가입), 제156조(공제 계약자 및 공제료), 제157조(공제계약 기간 및 기일관리), 제159조(담보물건의 재해)

제재내용 공시

1. 조합명 : 전남동부수협
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4. 3. 7,
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임 · 직원	감봉 및 변상(3명), 견책 및 변상(1명)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제재대상 사실

○ 대손판정 불인정으로 부실채권 발생

가. 기업시설자금 대손판정 불인정

- 1급 이○○ 외 2명은 차주 전○○(의 기업시설자금대출(새우양식장 건축자금 기성고대출) 463,000천원을 농신보 보증 85%로 취급하면서 새우양식장 시설이 기초 철골공사만 진행된 상태로 기성고에 따른 대출금 지급이 불가함에도 3차 기성고(시설 완공시 지급하는 마지막 기성고)로 168,470천원의 대출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시설이 완공되지 않은 채 대출이 부실화 되어 3차 기성고로 지급한 168,470천원의 85%인 147,910천원(종속채무 4,710천원 포함)이 대손 불인정 되었으며, 동 대출은 담보물 처분 후 조합에 103,940천원의 손실을 초래하였고 이 중 3차 기성고 대출금 지급에 따른 책임부담분은 37,834천원으로 산출되었음.

나. 수산정책자금 무보증신용대출 대손판정 불인정

- 1급 이○○ 외 2명은 차주 박○○에게 기존 수산정책자금 무보증신용대출(어업경영자금)로 20,000천원 취급한 것이 있음에도 30,000천원을 추가로 취급하여 수산정책자금 무보증신용대출 한도 초과로 취급한 30,000천원이 전액 대손 불인정되어 동 금액만큼 조합에 손실을 초래하였음.

< 관련법규 >

1. 「신용보증면책기준」 제13조
2. 「업무위탁계약서」 제3조(수탁기관의 의무)
3.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 제3편 제48조(대출금의 지급)
4. 「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」 제6조(신용대출)
5. 「정책여신업무방법」 제1편 제6조(신용대출)